

증권저축약관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혜택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하며, 일반증권저축은 세금우대증권저축 이외의 증권저축을 말한다.
 1. 근로자우대증권저축
 2. 생계형저축
 3.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4. 장기증권저축
 5. 세금우대종합저축

제2조 저축계약의 성립 등

- ① 증권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선택하고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저축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장(또는 카드)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적립식 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저축자는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및 거치식 중 하나를 선택(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분할납입식 및 일시납입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거치식만 선택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저축자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저축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생계형저축 :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만 60세 이상인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 만 20세 이상인 자
 - 나. 제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4.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자
5. 장기증권저축 : 제한없음

제4조 저축한도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 나. 할부식 저축 : 계좌설정시 저축증권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별로 2,000만원 이내
2.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연간 600만원 이내, 매분기 1만원에서 150만원 이내
3. 생계형저축 : 3,000만원 이내
4.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 만 20세 이상인 자 : 1,000만원 이하
 - 나.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 : 3,000만원 이하
5.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3,000만원 이내
6. 장기증권저축 : 5,000만원 이내

제5조 한도관리

- ① 제4조의 저축한도의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 거치식 : 저축금
 2. 정액적립식 : 매월 또는 매분기 납입하는 저축금 × 계약기간
 3. 자유적립식 : 저축자가 사전에 납입기로 약정한 금액
-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저축재산으로 보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반증권저축
 -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 나. 할부식 저축 : 6월 만기 또는 1년 만기
2.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3년, 4년 또는 5년
3. 생계형저축 : 제한 없음
4. 세금우대종합저축 : 1년 이상
5.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1년 이상 3년 이내
6. 장기증권저축 :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제7조 저축금의 납입

- ① 자유적립식(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분할납입식)의 경우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회 최저 1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경우 매분기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저축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다.
- ③ 할부식 저축의 납입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시 할부금 : 계좌설정시 지정한 증권 매입가격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가입시 할부금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할부금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할부원금 + 할부이자)을 최초로 지정한 증권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매입일에 납입하여야 하며, 저축자는 납입을 연체한 경우 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할부원금	$\frac{\text{최초할부매입가격} - \text{가입시 할부금}}{\text{저축기간}(6 \text{ 또는 } 12)}$
할부이자	$\text{총잔여할부원금} \times \text{할부이율} \times 1/12$

3. 저축자는 약정한 저축기간 전이라도 할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다.
4. 저축자는 저축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담보유지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이하 “추가납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납부기간동안 저축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추가납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저축자는 추가납부기간동안 변동된 추가납부금까지 확인한 최종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증권

저축대상 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증권으로 한다.

제9조 저축증권의 매매가격

- ① 저축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 그 매매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성립된 가격으로 한다.
- ②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 상대방이 되어 증권시장서 거래되는 주권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당해 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주문일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저축자가 지정한 당해 증권이 주문일에 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이외의 증권을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사채(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당해 무보증사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매수익률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문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주문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내용 등(이하 “매매성립내용”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저축자 또는 저축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저축자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매매성립내용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저축자 요구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2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1조 수수료

회사는 저축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저축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회사와 저축자가 저축증권을 직접 매매하고 동 매매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축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저축자에게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할부금 등의 추가납입 요구

- ① 회사는 할부식 저축에서 저축자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저축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재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로부터 공제받은 세액 및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저축계좌의 현금이 추징세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가 미달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현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저축자를 대신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회사는 당해 세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임의상환정리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저축재산을 처분하여 할부금 및 대납세액과 그 이자의 회수에 총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납부금의 납부 요구시 제7조제3항제4호 단서의 내용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납부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할 수 있다.
 1.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입을 요구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추가납부금의 경우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추가납입을 요구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이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등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 ① 저축자는 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는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저축재산(저축금, 저축증권, 저축증권의 매각대금, 저축증권의 과실수익, 저축재산으로 유상청약을 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그 매각대금)이나 비저축재산(보유잔액·잔량 중 저축재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금액은 저축재산과 비저축재산별로 1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구분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 ③ 저축자가 비저축재산으로 유상신주를 청약한 후 배정받은 주식은 인출할 수 있다.
- ④ 저축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제하에 주식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및 증권을 즉시 입금 또는 입고하여야 한다.
-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 및 비저축재산에 동일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매도하는 때에는 비저축재산 주식을 우선 매도한다.

제16조 과세처리

- ①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세율
 2.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비과세
 3. 생계형저축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4.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비과세
 5. 세금우대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세율
 6. 장기증권저축 : 비과세. 다만,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 및 제37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우대증권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제36조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3. 세금우대종합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1년(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종전의 세금우대저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 저축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4. 장기증권저축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다만,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저축계약의 해지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저축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할부식저축의 경우 저축자가 3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가 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사유로 인한 예탁금 및 증권 인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적립식저축의 경우 저축자가 저축재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고 저축을 계속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증권회사에 저축재산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계좌는 처음부터 승계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저축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경우
 3. 기타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8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특별중도해지

-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경우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 저축계약이 해지 또는 인출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이 해지 또는 인출되는 경우 저축관련 제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20조 만기 및 해지 후 매매

저축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도 증권의 신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후 증권의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다.

제21조 저축재산의 반환

- ①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재산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②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할부식저축에서 잔여할부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월간 고객의 매

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보유잔액·잔량이 “영” 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저축자가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23조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녹취 또는 구술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지급 등의 처리

-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제신고서에 날인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호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타의 처리를 한다.
- ② 서명에 의한 저축거래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않아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저축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각종 신탁·채권 등의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2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할부식 저축의 특례

제30조 이자율 등의 변경

① 회사는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유지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에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이자율 변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자율 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1조 할부식 저축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자가 할부금 전액을 납입한 때에 종료된다.

② 저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저축재산에서 연체이자, 할부이자 및 잔여 할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저축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저축증권으로 지급한다.

제3장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특례

제32조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가입기간 등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저축자는 저축가입시 회사에

근로자우대증권저축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저축계약 기간연장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저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생계형저축의 특례

제34조 생계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시행 후부터 2008.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
- ③ 신규 저축가입시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 내역서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특례

제35조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저축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한다.
 1. 일시납입식 : 저축금의 납입일
 2. 분할납입식 : 저축금의 최종납입일
- ③ 신규 저축가입시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에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저축계좌는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증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증권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제37조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의 공제세액 및 제16조제2항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특례

제39조 저축한도

- ①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는 금융기관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
- ③ 저축자가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제4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시행 후부터 2008. 12. 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 ② 이 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경우 기존계좌의 만기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
- ③ 신규 저축가입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장 장기증권저축의 특례

제41조 장기증권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저축자는 1인 1금융기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제4조제6호의 저축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저축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등

- ① 저축계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매 1년 동안의 보유비율(증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금 불입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저축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제43조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등

-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의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제44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